

증권담보용자 거래 핵심(요약) 설명서

- ◆ 이 설명서는 증권담보용자 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증권담보용자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증권담보용자 거래의 구조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삼성증권이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 ◆ 증권담보용자 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이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상품 정보



※ 위 아이콘 정보는 상품 특성을 도식화 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주요 내용
증권담보용자	보유중인 유가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평가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 사용(매매 또는 출금)하는 거래
신용거래용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일부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등

-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에 대한 담보평가금액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계좌내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의 가중평균) 이상 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해 삼성증권이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

삼성증권

으면 상환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최고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고객님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

1. 청약 철회

1) 행사 기한

-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의 **익일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

2) 행사 방법

- 대출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삼성증권이 부담한 인지세를 삼성증권에 상환하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거나 패밀리센터(☎1588-2323) 혹은 지점에 전화해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철회 효과

- 삼성증권은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 **약정을 즉시 취소**하고, 3영업일 이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대출 내역 **삭제**를 진행합니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청약철회	중도상환
유리	- 신용정보원 대출기록 삭제*	- 부담 비용 없음
불리	- 삼성증권이 부담한 인지세를 소비자가 반환	- 신용정보원 대출기록 미삭제*

※ 대출기록은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청약 철회권 적용 제외

- 단,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대매매로 처분된 경우,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 삼성증권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제17조 제3항), 적정성 원칙(제18조 제2항), 설명의무(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내용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 등으로 삼성증권에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기간

-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과 삼성증권이 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를 요구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효과

- 위법계약해지 시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열람요구권 행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제3항)

1) 열람요구 대상 자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2) 자료의 열람, 제한 또는 거절 등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 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법령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상담 연락처

◎ 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패밀리센터(☎1588-2323, 080-911-0900) 및 홈페이지(<https://www.samsungpop.com>), 영업 지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계약한 금융상품 관련 소송 시에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주소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 할 경우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증권담보용자 거래설명서

I. 증권담보용자 개요

1. 증권담보용자의 개념

- 증권담보용자(이하 '대출')란 고객이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결제 기준)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삼성증권은 담보가액(전일 종가 평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2. 대출의 종류

일반 담보대출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한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채권, 파생결합상품 등을 담보로 담보가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하는 거래
해외 주식 담보대출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담보로 원화로 평가한 담보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원화를 대출하는 거래
매도 담보대출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도 체결하고 결제일 전에 매도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하는 거래로 결제일에 대출금이 상환되는 단기대출(연금저축담보대출 제외)

3. 대출 약정

- 대출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은 본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증권담보용자 약관을 숙지한 후 신청서를 통해 인지세 납부와 함께 증권담보용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단, 전자거래 서비스 약정이 체결된 고객에 한해 삼성증권 홈페이지, HTS/DTS 또는 mPOP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고객별 대출 한도 : 50억원(개별 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2) 대출이자 외 비용 : 약정 시 약정금액에 따른 인지세와 매도 상환 시 매매수수료 및 각종 세금 발생

① 인지세: 고객과 삼성증권이 각각 50%씩 부담

약정금액	인지세	
	고객	삼성증권
~ 5,0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175,000원	175,000원

* 인지세는 계약 문서 작성에 대한 세금으로 약정 해지 시 **환급 불가 주의**

② 주식 매도 상환 시 수수료 및 각종 세금

- 삼성증권이 정한 매매 수수료율 적용

- 국내 주식 : 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업무/상품안내 > 수수료/예탁금이용료 안내
- 해외 주식 : www.samsungpop.com > 트레이딩 > 해외 주식 > 해외 주식거래안내 >

해외 주식거래절차 안내 > 주문/수수료

- 반대매매 주문은 오프라인 수수료율 적용

3) 신규 증권담보대출 제한 : 개인 한도에 여유가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 신규 대출 불가

- ①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 ② 삼성증권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 ③ 계좌의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비율 이하인 경우
- ④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8에 해당하는 경우
 - 연체료로 인한 고위험자(현재 은행 연체 등 불건전금융거래정보가 있는 고객)
 -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개인회생채무자, 고액 세금체납자 등)
 - 추가납부 이행능력 부족 가능성으로 인한 고위험자(기초 수급자)
 - 금융사기 피해자(전자금융사기(스미싱, 파밍 피싱 등) 등록자 등)

II. 대출 금액 및 기간

1. 대출 금액

◎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한 대출 가능 잔고의 담보가액(전일 종가 평가)에 대출 비율을 반영한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단, 그룹 C 주식 종목은 신용/대출 합산 2억원 초과 불가)

2. 대출 가능 종목

- 1) 상장주식, 채권(A등급 이상) 및 삼성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상품, 집합투자 증권, 삼성증권이 지정한 해외 주식에 한해 가능
- 2) 시장 상황 및 삼성증권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종목과 한도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 3)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 > 인터넷뱅킹 > 신용/대출 > 신용/대출가능종목조회에서 확인 가능

3. 대출 비율 및 최소 담보유지비율

1) 일반담보대출

구분		대출비율	담보유지비율
주식	그룹 S, A	60%	140%
	그룹 B, C	60%	150%
해외 주식	해외 주식	50%	160%
채권	국공채	65%	140%
	회사채(AA등급 이상)	65%	140%
	회사채(A등급 이상)	50%	150%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60%	150%
	혼합형	60%	150%
	채권형	65%	140%

	연금저축펀드	50%	140%
파생결합상품	파생결합사채 (ELB/DLB)	65%	140%
	파생결합증권 (DLS)	50%	150%
	주가연계증권 (ELS)	50%	150%

2) 매도담보대출

- ① 국내 주식 : 결제재매매 금액의 98%
- ② 해외 주식 : 외화 결제재매매 금액 × 98% × 전 영업일 삼성증권이 고시한 최종 외화매도 기준환율의 95%
- ③ 집합투자증권(연금저축담보대출 제외)
 -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주1)} 이전 : 매도신청금액^{주2)} × 대출비율
 -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주1)} 이후 : 매도정산금액 - 대출이자

주1) 기준가 적용시간, 별도 지정 없으면 13:00
 주2) 수량 매도, 전액 매도 시 매도신청금액은 매도신청수량에 해당하는 세전 평가금액 (세전 평가금액 적용 기준가는 대출일의 기준가)

4. 대출 기간(만기일)

- 1)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최장 6개월
- 2) 채권 : 채권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최장 6개월) 중 먼저 다가오는 날
- 3) 집합투자증권(연금펀드 포함) : 펀드 청산일과 대출 만기일(최장 6개월) 중 먼저 다가오는 날
- 4) 파생결합상품 : 상환 지급일과 대출 만기일(최장 6개월) 중 먼저 다가오는 날
- 5) 매도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매도 결제일까지
- 6) 대주주/특수관계인 : 최장 3개월
- 7) 비상장주식 : 최장 3개월

Ⅲ. 이자 및 연체이자

1. 대출이자

1) 증권담보대출 이자

- ① 이자율 적용 방식 : **체차법**
 - 체차법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대출 기간 중 일정 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

- ② 이자율 (단위: 연/%)

구분	대출기간				
	~30일	~60일	~ 90일	~ 180일	180일 초과
이자율	7.6%	8.1%	8.5%	8.8%	9.0%

※ 대출 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값

- 가산금리 : 리스크 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 제반 비용(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목표이익률을 반영

- 매월 기준 및 가산금리 공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 연금저축 이자율: 3%

③ 이자 납부일 : 매월 첫 영업일 정기이자 납부. 중도 상환 시에는 상환일

※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연계된 계좌를 통해 이자 납부

④ 이자 계산

- 산식 : 대출금액 × 이자율 × (실행일~결제일까지 일수)/365 (일수 계산 : 한편냉기)

- 사례

9월 3일 최초 대출금 500만원 중 200만원은 20일 사용 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50일(9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사용 후 전액 상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 [일부상환] 9월 23일 200만원 일부 상환 시 납부하는 이자 금액 : 20,821원

$$= 500 \text{만원} \times 7.6\% \times (20/365)$$

· [정기이자] 10월 1일 300만원 정기이자로 납부하는 이자 금액 : 4,372원

$$= 300 \text{만원} \times 7.6\% \times (7/365)$$

· [전부상환] 10월 23일 300만원 전액 상환 시 납부하는 이자 금액 : 15,188원

$$= (300 \text{만원} \times 7.6\% \times (3/365)) + (300 \text{만원} \times 8.1\% \times (20/365))$$

2) 매도담보대출 이자

① 이자율 : 연 9.0%

② 이자 납부일 : 매도 결제일. 중도 상환 시에는 상환일

2. 중도상환 수수료 : 증권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모두 없음

3. 연체이자

- 최종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0%)로 구성되며 최대 11.0%를 적용

[연체이자 예시] 대출금 5,000만원에 31일간 만기 미상환 연체 시 대출 원금에 연체이자율

(예 : 11.0%) 적용해 상환 시 연체이자 467,123원(5,000만원×11.0% ×31/365) 납부

IV. 대출 상환 및 연장

1. 상환

1) 만기상환 : 만기일 다음 영업일에 계좌 내 현금으로 자동상환

(계좌 내 현금 부족 시 담보증권 반대매매 처리)

2) 중도상환 : 만기 전 매도 대금 및 현금으로 언제든지 상환 가능

① 매도상환 : 담보증권 일부 매도 시 매도 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② 현금상환 : 상환 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연계된 계좌를 통해 만기 및 중도상환 가능

※ 해외주식담보대출 상환시, 해당 계좌에 예약된 원화 예수금이 있으면 대출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됨

2. 만기 연장

- 1) 만기 연장 조건 충족 시 만기 15영업일 이전부터 고객이 요청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2) 만기 연장 조건
 - ① 담보증권이 대출 가능 종목일 것
 - ② 계좌의 담보비율이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일 것
 - ③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않은 고객
 - ④ 신용연체정보 및 전자금융사기 등록 고객이 아닐 것

V. 담보권의 실행(반대매매)

- ◎ 삼성증권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좌에 예약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임의 처분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임의상환 사유

1) 담보유지비율 미달

- 계좌 담보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D일)하고, D+1일 08:00, D+2일 08:00 두 번 연속으로 담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D+2일 동시호가에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변제한다.
- 추가담보 납부 요구 및 반대매매 통보는 약정 시 정한 담보부족/반대매매 통보 수신처(이메일, SMS)로 한다.

2) 만기 미상환 : 만기일 다음 영업일 반대매매를 통해 변제한다.

3) 약관 제17조(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해당 시

2. 임의상환 처리 방법(반대매매)

1) 임의상환(반대매매)을 위해 처분하는 증권의 순서

- ① 현금(외화 포함) > 담보증권 > 그 밖의 증권
- ② 현금상환 방법
 - 반대매매일 **06:30, 08:15, 08:40, 08:50**경에 현금 상환
(단, 외화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수작업 처리로 시간 변동 가능)
 - 현금상환 순서 : 원화(KRW) > 엔화(JPY) > 위안화(CNY) > 홍콩달러(HKD) > 미국달러(USD)
 - 다수의 대출이 있는 경우 현금상환 순서
 - 그 외 증권의 담보대출 > 해외 주식 담보대출 > 국내 주식 담보대출
 - 다수 대출 중 대출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또는 알파벳 순)
 - 현금상환 대상금액 산출 방법

현금상환 대상금액	=	담보부족액 $[(\text{담보유지비율} - 1) - (\text{담보유지비율} \times (\text{경과일수} / 365^{\text{주}})) \times \text{이자율}]$
--------------	---	--

주) 윤년의 경우 366일

※ 단, 전체 현금상환 대상금액은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나, 실제 다수 대출 중 일부 상환 시에는 개별 대출에 적용되는 실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환됨

- ③ 담보증권 반대매매 순서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그 외 증권
 - 대출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또는 알파벳 순)
- ④ 담보 외 증권 반대매매 순서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그 외 증권
 - 최근 매입일 > 종목번호 빠른 순(또는 알파벳 순)
- ⑤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 : 한국 > 일본 > 중국(상해, 심천, 홍콩) > 미국

2) 반대매매 방법

- ① 국내 주식 : 증권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시장가)
단, K-OTC 등 시장가 주문 불가 시 매도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최초의 가격에 따라 처분
- ② 해외 주식 :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도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최초의 가격에 따라 처분
(단, 삼성증권 영업시간(09:00~16:00) 이외에 주문 거부 사유가 발생되면 다음 날로 주문이 순연될 수 있음)
- ③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별 환매 기준가 적용기준에 따른 가격에 따라 처분
- ④ 수수료 : 오프라인 수수료율(지점/패밀리센터)을 적용
(<http://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업무/상품안내 > 수수료/예탁금이용료 안내)

3)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

- 각종 거래비용을 제외한 매도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
- 수도결제, 미상환 용자 상환 등 현금미수 반영 후에 이를 감안해 담보부족 반대매매 수량 산정 작업을 진행한다.
- 수량 계산 시 매도가격은 전일 종가 기준 S, A 등급은 85%, B등급 이하는 80%로 한다. 단, 시초가 주문체결 후 담보부족 미해소 시 부족분만큼 하한가 및 해소 가능 수량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반대매매를 요청할 수 있다.
-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담보비율

담보유지비율	=	$\frac{[\text{기준가격} \times (\text{보유수량} - X)]}{[\text{신용공여잔고} - (\text{매도가격} \times X)]}$
--------	---	---

주식처분 수량[X]	=	$\frac{(\text{신용공여잔고}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text{전일 종가}) \times \text{보유수량}}{(\text{매도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text{전일 종가})}$
------------	---	--

※ 반대매매 증권의 처분 순서에 따라 매매수량 단위로 증가(1주 ~대출잔여수량까지)하면서 임의상환(반대매매) 후 담보비율을 가계산함

4) 집합투자증권담보대출

- 집합투자증권 담보부족 반대매매 산정 방법

- 반대매매 대상금액을 산출하고 당일 펀드 기준가의 95%의 매도가격으로 처분수량 산정

집합투자증권 환매좌수	=	$\frac{\text{(총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times 1000}{\text{(당일 기준가} \times 95\%)}$
----------------	---	--

※ 단,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부족 해소를 위한 상환금액 산정 시 기타소득세 발생 등의 사유로 반대매매 수량이 기준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음

▪ 집합투자증권 만기 미상환 반대매매 산정 방법

- 만기 미상환 미수금 + 결제 예정일까지 연체이자로 수량 변환 없이 금액으로 환매 신청

※ 단,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만기 미상환금액 산정 시 기타소득세 발생 등의 사유로 반대매매 금액이 기준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음

▪ 집합투자증권 반대매매를 위한 환매 청구 시간

- 반대매매를 위한 환매 신청 시간은 12:00 이전으로 한다.

▪ 연금저축 과세 관련 사항

· CMA 계좌로 출금하는 시점에 연금계좌 인출 순서에 따른 자동과세 처리

· 연금계좌 인출 순서 :

- ① (과세 제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 ② (과세) 퇴직금
- ③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5) 반대매매 사례

① 추가담보 미납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 산정

▪ **국내 주식 A등급 종목 1,000주 보유, 매수가 10,000원, 대출금 6,000,000원, 최소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인 경우**

※ 각종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전일 증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 계산 시 아래와 같이 A종목 195주 매도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 고
D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67%	
D일 장마감	8,300원	8,300,000원	138%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8,100원	8,100,000원	135%	추가담보 미납(30만원 담보부족)
D+2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전일 증가(8,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85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 $195\text{주} = \frac{(6,000,000\text{원} \times 1.4) - 8,100 \times 1,000\text{주}}{(6,885\text{원} \times 1.4) - 8,100\text{원}}$ ※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경우 수량 전량 처분			

▪ **해외 주식 B종목 100주 보유, 매수가 100 USD, 대출금 6,000,000원, 최소담보유지비율 160%, 원/달러 환율 1,200원, 현금 0원인 경우**

※ 각종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원/달러 환율 1,200원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

☞ 전일 증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 계산 시 아래와 같이 B종목 59주 매도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원화)	담보비율	비고
D일 장중	100 USD	12,000,000원	200%	
D일 장마감	65 USD	7,800,000원	156%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66 USD	7,920,000원	158%	추가담보 미납(168만원 담보부족)
D+2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전일 증가(66 USD) 대비 15% 하락한 가격(56.10 USD)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 $59\text{주} = \frac{(6,000,000\text{원} \times 1.6) - (66\text{ USD} \times 100\text{주} \times 1,200\text{원})}{(56.10\text{ USD} \times 1,200\text{원} \times 1.6) - (66\text{ USD} \times 1,200\text{원})}$ ※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경우 수량 전량 처분			

② 만기 미상환 발생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 산정

- 국내 주식 증권담보대출금 5,000,000원, 국내 주식 A등급 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인 경우

※ 각종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12,000원	12,000,000원	240%	
D+1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증가) 대비 -15%인 10,200원으로 할 경우, 증권담보대출금인 500만원(5,000,000/10,200=490.2) 상환을 위해 491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4,000원	4,000,000원	80%	
D+1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증가) 대비 -15%인 3,400원으로 할 경우, 증권담보대출금인 500만원(5,000,000/3,400=1,470.6) 상환을 위해 1,000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00만원을 추가 납부			

- 해외 주식 증권담보대출금 5,000,000원, 해외 주식 종목 100주를 주당 100 USD에 매수, 원/달러 환율 1,200원, 현금 0원인 경우

※ 각종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원/달러 환율 1,200원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외화)	평가금액(원화)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110 USD	13,200,000원	264%	

D+1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15%인 93.50 USD로 할 경우, 증권담보대출금인 500만원(5,000,000/(93.50 USD×(1,200원×0.95)) =46.91) 상환을 위해 47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외화)	평가금액(원화)	담보비율	비 고
만기일	30 USD	3,600,000원	72%	
D+1일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15%인 25.5 USD로 할 경우, 증권담보대출금인 500만원(5,000,000/(25.50 USD×(1,200원×0.95)) =172) 상환을 위해 100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093,000원을 추가 납부			

6) 반대매매 종목 교체 가능 시간

- 반대매매 종목 교체는 반대매매 당일 08:50 전까지 요청한 고객에 한함
- 해외 주식은 일본, 중국(상해, 심천, 홍콩) 시장은 당일 08:50 전까지 요청, 미국 시장은 당일 16:00 전까지 요청한 고객에 한함.

※ 종목 교체 시 장 운영 시간이 다른 시장과의 교체는 불가

한국(09:00 시작)-일본(09:00 시작)→가능

한국(09:00 시작)-중국(10:30 시작)→불가능

7) 채무 총당 순서

- 반대매매를 통한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총당하며, 고객과 합의한 경우 채무 총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VI. 기타 유의사항

1. 해외 주식 대출 환율 적용

- 상환 및 임의상환 시 환율은 전일 삼성증권이 고시한 환율의 95%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 09:30 기준 실제 환전분과의 차이 및 제비용을 포함해 최종 정산한다.

예) 전일 삼성증권이 고시한 달러(USD) 환율이 1,000원인 경우 950원을 기준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실제 환율이 980원인 경우 이에 대한 차익(30원) 및 제비용을 정산

2. 출금·출고 제한

- 증권담보대출 계좌의 담보평가 비율이 삼성증권이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 내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출고가 제한됩니다.

3.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대출

1) 담보종목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담보종목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일반 대출 기준과 별도의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여부를 삼성증권에 알려야 합니다.

2) 삼성증권과 계열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등기임원 포함)은 증권담보대출을 약정·실행할 수 없습니다.

4. 약관·이자율 등 변경 공시

1) 삼성증권은 필요한 경우 **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연체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추가 담보 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삼성증권은 증권담보용자 이자율 등을 포함한 증권담보용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에 비치하거나 삼성증권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용 화면, 유사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 단,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개정 약관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합니다.

이 때 고객이 안내받은 날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했다고 판단합니다.**

※ 관련 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 변경이 급박하고 부득이하게 이뤄질 경우 개정 약관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 거부 의사를 명시한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1) 반대매매 후 최종 미납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변제전까지 매일 연체 이자율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2) 미납금 발생 후 **3개월간 미변제 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증권담보용자 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①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 거래로 인해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신용 거래, 증권담보용자 거래, 만기연장 등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④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 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 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에 따라 안내하는 내용으로 삼성증권의 증권담보용자 거래가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또는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연금저축 담보대출

① 연금저축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부족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반대매매 후 당해 납입분에서 상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및 연계 CMA 계좌 대체 출금액에는 연금저축 출금에 따른 일반 과세분이 포함됩니다. 펀드 반대매매 주문과 매도 결제 사이에 입금/출금이 발생하면 대체되는 금액이 상환금보다 많거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상품의 핵심 내용만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담보용자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CD 수익률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 수익률과 관련된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입니다.

I.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월)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삼성증권의 증권담보유자 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의 직전 3개월 평균 값,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 제반비용(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목표이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II.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 (1)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 (2)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III.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 (1)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 (Level 1 산출 불가시)
 - (2)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 (3) Level 3 (전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수익률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2)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IV.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V.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적격거래 (2)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3)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 (4)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5)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 (6)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2)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VI.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2)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I.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 (2)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 (5)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 (6) 산출업무의 **타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다음의 대체금리를 사용하여 **증권담보용자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직전 3개월 5개 신용평가사 CP1년물(A1)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 및 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산정시 사용된 대체금리에 대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CD수익률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삼성증권 패밀리센터(1588-2323)또는 지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